

동 지침은 「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」 사회복지시설 대응 지침(10판)(“22.2.10. 시행)을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(“22.4.18.) 및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계획 (“22.4.18.)에 따라 수정·보완한 것으로 시설 소관부서에서 개별 사회복지시설의 사정 및 특성에 따라 적합하게 적용하시기 바랍니다.

「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」 사회복지시설 대응 지침 (11판)

2022. 4. 25.



보건복지부

목 차

I. 개 요	1
II.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대응	2
1. 코로나19 관리체계 및 유관기관 협조체계 유지	2
2. 감염예방을 위한 방역관리	2
3. 시설 운영 세부사항	3
4. 의심 · 확진자 발생시 조치사항	4
5. 행정사항	4
III. 지자체 협조사항	6
[참고] 보건복지 소관 사회복지시설 분류	7

I 개 요

1. 목 적

□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(코로나19)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 계획 및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('22.4.18.)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의 운영 방향 제시

○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코로나19 예방 및 관리 대응절차와 조치 사항을 자율방역체계*로 재정비하여 정상 운영 도모

*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안내하는 손 씻기, 환기·소독 등 개인의 일상생활에서 준수해야 하는 생활방역 수칙(권고) 수준 유지

<포스트 오미크론 대응계획('22.4.18. 중대본)>

▲지속가능하고 효율적인 대응체계로 전환, ▲고위험군·감염취약계층 집중관리를 통해 국민 건강피해 최소화, ▲신종변이 및 재유행 등 선제적 대비를 전략으로,

①포스트 오미크론에 따른 점진적 일상회복 추진, ②지속가능한 효율적 감염병 관리, ③일반의료체계로의 단계적 전환 추진, ④고위험군 및 감염취약계층 보호, ⑤신종 변이 및 재유행 대응체계 마련 등 추진

2. 기본방향

□ 일상 속 감염 확산 억제를 위해 ①자율방역 하 사회복지시설 정상 운영 원칙, ②지역 내 방역상황을 고려하여 지자체 책임하에 사회복지시설 운영 범위 조정

* 지자체에서 지역별 유행상황, 방역대응 역량 등을 고려하여, 강화된 방역 조치 시행 가능

○ 사회복지시설의 출입, 외출·외박, 프로그램 운영 등 제한 해제

○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계획에 따른 고위험군·감염취약계층 집중 관리의 방역대응 패러다임 전환에 대응하여('22.4.18),

- 요양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에 적용되는 입소자·종사자 선제검사, 접촉면회 및 외부인 출입금지, 외출·외박 제한 등의 방역조치는 별도 지침으로 지속

1. 코로나19 관리체계 및 유관기관 협조체계 유지

□ 사회복지시설 내 감염관리체계 및 비상연락체계 유지

- 복지부(중수본 및 사업부서)와 지자체, 사회복지시설간 상시 연락체계 구축 및 시설 내 감염관리책임자(방역관리자) 등 지정

* 감염관리책임자 : 시설내 환자발생시 신고, 시설 내 위생물품 비치 등 수행

** 시설 직원을 방역관리자로 배치하되, 직원이 없는 경우 이용자가 방역관리자로 활동 가능

- 시설은 확진자 다수 발생, 방역수칙 위반 등 특이사항을 지자체에 보고, 지자체는 사실관계 조사 후 복지부 보고

- 감염병 관리 및 대응을 위한 유관기관*과의 비상연락체계 유지

* 시도 및 시군구 소관부서-관내 보건소-소방서- 선별진료소- 의료기관

- 운영 중지 시설의 운영 재개, 사전 조치 신속 시행(시설)

① 시설 소독 및 환기, ② 시설운영수칙 및 프로그램 운영방안 마련,

③ 방역물품(손소독제, 보건용마스크, 자가검사키트 등) 확보 등

2. 감염예방을 위한 방역관리

□ 환경 위생 관리

- 화장실 등에 손 소독제(비누, 알콜 70% 이상 손소독제 등) 등을 충분히 비치, 관리

- 시설 내 주요 공간의 청소, 소독 및 환기 유지

- 사람의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*에 대한 소독(일 2회 이상 권고)

* 문손잡이, 난간, 다양한 터치 장치, 책상, 탁자, 의자, 전화, 컴퓨터 키보드는 하루에 한 번 이상 소독하며, 출입문이나 엘리베이터 등은 더 자주 소독

- 시설 내 환기(일 3회 이상 자주, 매회 10분 이상 권고)

- 마스크 착용, 체온계, 손 소독제 등 감염 예방을 위한 물품 비치

- 올바른 방법으로 KF80·KF94 등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며, 자가검사 키트를 비치하여 의심증상 시 신속하게 활용

새로운 생활 속 방역수칙 (방대본, '22.4.25)	
1	"코로나19 예방접종 완료하기"
2	"올바른 마스크 착용으로 입과 코 가리기, 실내 음식물 섭취 등 마스크를 벗는 시간은 가능한 짧게"
3	"30초 비누로 손 씻기, 기침은 옷소매에"
4	"1일 3회(회당 10분) 이상 환기, 다빈도 접촉부위 1일 1회 이상 주기적 소독"
5	"사적 모임의 규모와 시간은 가능한 최소화 하기"
6	"코로나19 증상 발생시 진료받고 집에 머물며 다른 사람과 접촉 최소화"

3. 시설 운영 세부사항

◇ 출입관리, 면회, 외출·외박, 식사 등 관련, 해당 시설 지침이 있는 경우 소관 시설 지침을 우선 적용하며(노인, 요양시설 등), 개별 사회복지시설의 특성에 따라 시설 소관부서에서 달리 적용 가능

- (출입) 시설 종사자, 이용자 등은 개인위생 준수(마스크 착용, 손소독 등) 후 출입하며, 유증상자(발열, 호흡기 증상)의 출입 자제
 - 자원봉사자·실습생, 외부강사 등도 시설장 판단하에 출입하되, 개인위생에 철저,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확인, 마스크 착용 및 손소독(소독제 사용, 손씻기) 실시 후 활동토록 안내
- (유증상자) 아래 시설 종사자 또는 이용자는 즉시 검사 필요
 -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시설 종사자 또는 이용자는 즉시 검사 받고, 결과가 나올 때까지 출근 또는 이용을 중단할 것
 - 검사결과가 양성(확진)인 경우, 격리기간 등은 질병관리청 중앙방역 대책본부 격리지침에 따름

○ 입소자 중 의심환자 발생 시, 대기 가능한 격리공간을 확보

* 격리공간은 문을 닫을 수 있고 환기가 잘되는 공간으로 지정 및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한 사람만 격리공간을 출입할 수 있도록 제한

□ (면회, 외출 등) 마스크 착용 및 손소독(소독제 사용, 손씻기), 환기 등 자체적인 방역관리 하 면회, 외출, 외박 등 제한 없음

- 다만, 외출·외박에서 복귀 후 감염 예방을 위해 증상확인(발열, 호흡기증상 발생 등) 모니터링 권고

□ (프로그램 운영) 마스크 착용 및 손소독(소독제 사용, 손씻기), 환기 등 자체적인 방역관리 하 프로그램 운영에 제한 없음

□ (시설 내 취식) 손소독(소독제 사용, 손씻기), 환기 등 자체적인 방역관리 하 취식 가능

○ 다만, 좌석 띄어 앉기, 테이블간 거리두기, 식사 중 대화 및 이동 자제 등 감염예방 조치 권고

4. 의심·확진자 발생시 조치사항

◇ (대응원칙) ①의심증상시 발생시 즉시 검사, ②신속한 확진자 관리를 통해 추가전파 억제, ③상시 연락체계 유지

※ 관련 대응지침은 감염병 진행상황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니, 최신 지침 내용에 대한 숙지 필요 (질병관리청 누리집, <https://www.kdca.go.kr> 참조)

○ 시설 내 의심증상 발생 시 진단검사 실시 및 적정 진료를 받도록 안내

- (의심)환자는 격리 공간에 격리, 전용물품(개인용 수건, 식기류, 휴대전화 등)으로 사용하기 등 다른 사람과 접촉 최소화

- 필요시, 시·도(보건소) 지시사항에 따라 선별진료소 및 의료기관으로 이송하며 타인에게 전파되지 않도록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함

- (의심)환자의 이송 또는 격리 해제 이후에는 차아염소산나트륨, 알코올 등의 소독제를 이용하여 환자가 머물렀던 격리장소를 소독

※ 종사자 의심증상 발생 시 신속하게 검사를 실시하도록 안내하고 검사결과가 나올때까지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최소화

5. 행정사항

□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업무배제 시 유급휴가 및 대체인력 등 활용

- (유급휴가) 확진으로 관할 보건소의 격리통보에 의해 격리된 종사자는 격리기간 동안 유급휴가* 처리 가능

※ 감염병관리법 제41조의2(사업주의 협조의무)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이 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되는 경우 「근로기준법」 제60조 외에 그 입원 또는 격리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줄 수 있다.

- (대체인력 지원) 종사자 확진 등으로 인한 업무배제 시 '사회복지시설 대체인력' 사업 활용 가능

- (업무 조정) 종사자 확진 등에 대비하여 대체 근무자 지정, 재택·원격·교대근무 등 근무형태 마련

□ 사회복지시설 휴관 시,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에 대한 돌봄서비스 제공이 유지될 수 있도록 조치 필요

* 시설별 긴급 돌봄서비스 방안 마련, 시설 운영 중지 시 빈틈없는 서비스 제공 조치

** 아동(도시락, 식사지원 등), 노인(안부전화, 도시락 등), 장애인(활동지원) 등

Ⅲ 지자체 협조사항

- (현장지원) 감염병 상황에 유기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현장과 지속적 소통 등 유지
 - (연락체계 구축) 시설 내 의심환자 등 상황 발생 시 즉시 신고를 위한 관할 시군구 및 시도 비상연락체계 구축
 - (돌봄 제공) 사회복지시설 휴관 시,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에 대한 돌봄서비스 제공이 유지될 수 있도록 조치 필요
 - ※ 시·도 사회서비스원 긴급돌봄 등 활용
- (지침 적용) 본 지침은 사회복지시설에 적용되는 기본 가이드라인의 성격으로 지자체에서 사회복지시설별 특성 및 방역상황에 따라 별도 방역지침 적용 또는 강화된 조치 가능

참고

보건복지부 소관 사회복지시설 세부 분류

대상자별	형태	시설 종류		소관부서	관련법령
노인	생활	◦ 의료	· 노인요양시설	요양보험운영과	「노인복지법」 제31조
			·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		
		◦ 주거	· 양로시설, 노인 공동생활가정	노인정책과	
	· 노인복지주택				
	◦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				
	이용	◦ 재가	· 재가노인복지시설(방문요양, 주·야간보호, 단기보호, 방문목욕, 재가노인지원, 방문간호)	요양보험운영과	
		◦ 여가	· 노인복지관	노인지원과	
· 경로당, 노인교실					
◦ 노인보호전문기관		노인정책과			
◦ 노인일자리지원기관		노인지원과			
아동	생활	◦ 아동양육시설, 공동생활가정		아동권리과	「아동복지법」 제52조
		◦ 아동일시보호시설			
		◦ 아동보호치료시설			
		◦ 자립지원시설			
		◦ 공동생활가정(학대피해아동쉼터로 지정된 곳에 한함)		아동학대대응과	
	이용	◦ 아동상담소, 아동전용시설, 가정위탁지원센터		아동권리과	
		◦ 지역아동센터		인구정책총괄과	
		◦ 아동보호전문기관		아동학대대응과	
◦ 다함께돌봄센터		인구정책총괄과	「아동복지법」 제44조의2		
장애인	생활	◦ 생활시설	· 장애유형별 거주시설	장애인권익지원과	「장애인복지법」 제58조
			· 중증장애인 거주시설		
			· 장애영유아 거주시설		
			· 장애인단기 거주시설		
			· 장애인공동생활가정		
		◦ 쉼터	· 피해장애인쉼터		
	· 피해장애아동쉼터				
	이용	◦ 지역사회 재활시설	· 장애인복지관	장애인서비스과	「장애인복지법」 제58조
			· 장애인주간보호시설		
			· 장애인체육시설, 장애인수련시설,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		
· 수어통역센터, 점자도서관, 점서 및 녹음서 출판시설					
◦ 장애인의료재활시설		장애인정책과			
◦ 직업재활 시설		· 장애인보호작업장, 장애인근로사업장, 장애인직업적응훈련시설		장애인자립기반과	
	◦ 장애인생산물판매시설				
영유아	이용	◦ 어린이집	국공립, 법인, 직장, 가정, 부모협동, 민간	보육기반과	「영유아보육법」 제10조
정신 질환자	생활	◦ 정신요양시설, 정신재활시설 중 생활시설		정신건강정책과	「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2조 및 제26조
	이용	◦ 정신재활시설 중 이용시설			
노숙인 등	생활	◦ 노숙인자활시설 ◦ 노숙인재활시설 ◦ 노숙인요양시설		자립지원과	「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」
	이용	◦ 노숙인종합지원센터 ◦ 노숙인일시보호시설 ◦ 노숙인급식시설 ◦ 노숙인진료시설 ◦ 쪽방상담소			
지역주민	이용	◦ 사회복지관		지역복지과	「사회복지사업법」
기타시설	이용	◦ 지역사회활센터		자립지원과	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